

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

(연차휴가 사용촉진 2 차 통지)

수신	성명: (소속:)		
발신	○○○○ 대표이사		
통보 일자	년 월 일	1 차 촉구일	년 월 일

회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 61 조에 따라 귀하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하였으나, 기한 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통보하였으므로, 아래와 같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.

미사용 연차 일수	일	근로자 통보 일수	일
회사 지정 일수	일	사용 기간 만료일	. . .

■ 회사가 지정한 휴가 사용 일자

No	지정 사용일	일 수	비 고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
※ 지정된 날짜에는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, 지정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경우 해당 일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.

※ 이 통보서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 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.

통지자	(인)	수령일	. . .	수령인	(서명)
-----	-----	-----	-------	-----	------